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무 이탈자 등 연가일수 단축 및 복무연장기간 보수 감액〉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4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8.
3. 회부연월일 : 2025.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복무기간 중의 보수는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⑥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중 정해진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다.</u>
<u><신설></u>	<u>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된 복무기간 중의 보수는 제31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할 수 있다.</u>

□ 현행법은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고 처분 시 경고처분 횟수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 사회복지요원 복무 이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무 이탈자 및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탈 행위로 인한 연장된 복무 기간 중에는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이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사회복지요원 중 연장복무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소집해제 인원(A)	연장 복무자(B)	연장 복무자비율 (B/A)	연장복무 사유별 인원		
				복무 이탈	경고 처분	복무이탈+ 경고처분
2024년	30,011	1,160	3.87	375	535	250
2023년	32,423	1,268	3.91	385	656	227
2022년	33,816	1,200	3.55	306	685	209

1) 「병역법」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다만, 현행법에 따라 복무 이탈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동일한 이탈 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내려지는 연가일수 단축, 복무 연장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 조치가 다른 병역 의무 이행자의 의무 위반 시 처해지는 제재 조치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복무의무 위반시 제재처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연장복무	· 복무 이탈 일수의 5배 기간 · 경고처분 횟수마다 5일 연장 복무	좌 동
연가일수 단 축	규정 없음	복무기간 중 정해진 연가일수 단축 (연장복무 조치와 병과 가능)
보수감액	규정 없음	연장된 복무기간 중의 보수 감액 (연장복무 조치와 병과 가능)

□ 현역병의 경우 「군인사법」 2)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군기교육

2)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군기교육 징계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함.

□ 다만, 현역병 징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령」 제3조³⁾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併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장복무와 연가일수⁴⁾ 단축 처분은 두 조치 모두 복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병과할 경우 중복 제재로 보일 소지가 있고, 연장복무 기간 중 보수 감액 조치의 경우 연장복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등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하여 그 대가를 일부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현역병 징계 기준, 다른 병역 의무자 간의 제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행태에 적합한 새로운 징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임.

3) 「군인 징계령」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併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복무 기준으로 총28일(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1년 초과 : 13일)연가를 부여받고 있음.

- 국방부 및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연장된 복무기간 중의 보수를 감액 지급하는 등 제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특성,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